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6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곽동환 의원, 신달호 의원

1. 제안이유

중년기는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 시기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이에 중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의 건강에 관심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이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달성군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중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

2. 신체활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

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건강증진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2025. 3. 18. 일부개정, 2026. 3. 19. 시행)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2024. 9. 20. 타법개정, 2025. 6. 21. 시행)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 연구, 정보의 수집 · 관리 · 활용 · 보호, 인력의 양성 · 확보 및 고용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중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 신체활동,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향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담·교육 사업 추진, 민간 전문기관 위탁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및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중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은 건강관리·교육·상담 등 예방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안 제5조~제7조)
-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사업별 소요 비용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박 주 용 (☎ 2292)